

읍 · 면 공 통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불법건축물 선별 단속	소관부서	회천읍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건축물 단속시 불법사항 경과년도 및 시정·치유 가능 여부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 특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조치를 남발함으로써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주택과는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처리 기준을 수립·시행하여 어느 읍·면에서나 합리적이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과에서는 '98년 3월에 불법건축물 점검 계획을 수립 하여 읍면에 기사 달하여 그 기준에 의거 단속하고 있음 ○ 처리 기준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고 있음.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불법건축물 선별 단속	소관부서	주 내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건축물 단속시 불법사항 경과년도 및 시정·치유 가능 여부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특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조치를 남발함으로써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주택과는 불법 건축물을 적발 및 처리 기준을 수립 시행하여 어느 읍·면에서나 합리적이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조 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건축물 단속 추진실적 ('99.10월말 현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9">고 발 조 치</th> <th colspan="6">원 상 복 구</th> </tr> <tr> <th colspan="2">합계</th> <th colspan="2">소 계</th> <th colspan="2">공 장</th> <th colspan="2">주 택</th> <th colspan="2">축 사</th> <th colspan="2">근 생</th> <th colspan="2">소 계</th> <th colspan="2">공 장</th> <th colspan="2">주 택</th> </tr> <tr> <th>건</th> <th>면적</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12,072</td> <td>16</td> <td>10,714</td> <td>8</td> <td>2,970</td> <td>2</td> <td>74</td> <td>5</td> <td>7,559</td> <td>1</td> <td>111</td> <td>4</td> <td>1,358</td> <td>3</td> <td>953</td> <td>1</td> <td>405</td> </tr> </tbody> </table>	구분	고 발 조 치									원 상 복 구						합계		소 계		공 장		주 택		축 사		근 생		소 계		공 장		주 택		건	면적	20	12,072	16	10,714	8	2,970	2	74	5	7,559	1	111	4	1,358	3	953	1	405																		
구분	고 발 조 치									원 상 복 구																																																															
	합계		소 계		공 장		주 택		축 사		근 생		소 계		공 장		주 택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20	12,072	16	10,714	8	2,970	2	74	5	7,559	1	111	4	1,358	3	953	1	405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불법 건축물 사전 예방으로 주민들에게 법 집행의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불법 건축물 선별 단속	소관부서	온 현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건축물 단속시 불법사항 경과년도 및 시정·치유 가능 여부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있어 특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조치를 남발하므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바 향후 주택과는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여 어느 읍·면에서나 합리적이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건축물 단속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1차 계고 조치 ○ 시정기일내 미복구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 ○ 기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추인 허가 검토 ○ 추인 허가 불가능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등 강력 대처 ▣ 불법 건축물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1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 11건 • 주택 : 4건 • 균생 : 4건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불법 건축물 선별 단속			소관부서	남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건축물 단속시 불법사항 경과년도 및 시정·치유 가능 여부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있어 특정한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조치를 남발하므로써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주택과는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여 어느 읍·면에서나 합리적이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건축물 적발 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년도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발 : 적발시점전 3년내 행위 → 4건(공장 3, 균생 1) - 이행강제금부과 : '92. 6. 1일 이후 행위 → 5건(공장 4, 균생 1) - 과태료 부과 : '92. 5.31일 이전 행위 → 2건(공장 2) • 시정, 치유(양성화) : 고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후 행위자 민원접수후 처리(타법 저촉여부 확인) - 시 정 : 2건 → (근생 2) ○ 경감대상 및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 colspan="2">분류</th> <th>경감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이 행 강 제 금</td>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신축</td>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농업용</td> <td>주 택</td> <td>100㎡이하 100㎡초과</td> <td>10/100 20/100</td> </tr> <tr> <td>축사, 창고</td> <td>200㎡미만</td> <td>10/100</td> </tr> <tr> <td>작물재배사등</td> <td>200㎡이상</td> <td>20/100</td> </tr> <tr> <td>비농업용</td> <td>주 택 공 장 기 타</td> <td>- - -</td> <td>20/100 30/100 50/100</td> </tr> <tr>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증축 대수선</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농업용</td> <td>축사, 창고</td> <td>50㎡이하</td> <td>10/100</td> </tr> <tr> <td>작물재배사등</td> <td>50㎡초과</td> <td>20/100</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비농업용</td> <td>주 택</td> <td>-</td> <td>20/100</td> </tr> <tr> <td>공 장 기 타</td> <td>- -</td> <td>30/100 50/100</td> </tr> </tbody> </table>					구 분		분류		경감율	비고	이 행 강 제 금	신축	농업용	주 택	100㎡이하 100㎡초과	10/100 20/100	축사, 창고	200㎡미만	10/100	작물재배사등	200㎡이상	20/100	비농업용	주 택 공 장 기 타	- - -	20/100 30/100 50/100	증축 대수선	농업용	축사, 창고	50㎡이하	10/100	작물재배사등	50㎡초과	20/100	비농업용	주 택	-	20/100	공 장 기 타	- -	30/100 50/100
구 분		분류		경감율	비고																																				
이 행 강 제 금	신축	농업용	주 택	100㎡이하 100㎡초과	10/100 20/100																																				
			축사, 창고	200㎡미만	10/100																																				
			작물재배사등	200㎡이상	20/100																																				
			비농업용	주 택 공 장 기 타	- - -	20/100 30/100 50/100																																			
증축 대수선	농업용	축사, 창고	50㎡이하	10/100																																					
		작물재배사등	50㎡초과	20/100																																					
	비농업용	주 택	-	20/100																																					
		공 장 기 타	- -	30/100 50/100																																					

○ 경감대상 및 기준

구 분		분류		경감율	비고
조 치 결 과	과 태	신축	농업용	주 택	100m ² 이하 200m ² 미만
				축사, 창고, 작물재배사등	10/100 10/100
	료	기타	-	-	20/100
		증축 대수선	농업용	축사, 창고 작물재배사등	50m ² 이하 10/100
		기타	-	-	20/100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불법 건축물 선별단속	소관부서	광 적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건축물 단속시 불법사항 경과년도 및 시정, 치유 가능 여부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있어 특정한 기준이없어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함. ○ 군에서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각 읍면에 시행된 후에는 이에 의거 합리적이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불법 건축물 적발시에는 군에 고발 조치 후 행위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건축물 총 적발건수(10.31 기준) : 1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발견수 : 3건 - 군 조사지시에 의한 적발건수 : 9건 • 군 고발 : 12건 • 이행강제금 부과 : 12건 ○ 추후 군에서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처리기준이 수립 시달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단속으로 법 집행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불법 건축물 선별 단속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p>○ 불법건축물 단속시 불법사항 경과년도 및 시정·치유 가능 여부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있어 특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조치를 남발하므로써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처리 기준을 수립·시행하여 어느 읍·면에서나 합리적이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바랍.</p>		
조치결과	<p>○ 불법 건축물 발견시 건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78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벌칙을 처할 수 있고, 건축법 제82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건축법 제83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면에서는 양주군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허가취소, 이행강제금등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위한 행정처분을 제외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시정지시 등의 처분을 법 기준을 준수하여 조치하고자 함.</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불법건축물 선별 단속			소관부서	장 흥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건축물 단속시 불법사항 경과년도 및 시정·치유 가능 여부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특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조치를 남발함으로써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주택과는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처리 기준을 수립 시행하여 어느 읍·면에서나 합리적이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조 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건축물 적발 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년도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 : 적발시점전 3년내 행위 - 이행강제금 부과 : '92.6.1일 이후 행위 - 과태료 부과 : '92.5.31일 이전 행위 • 시정·치유(양성화) : 고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후 행위자 민원 접수후 																																																																												
치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대상 및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th> <th>분</th> <th>분</th> <th>류</th> <th>경감율</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이 행 강 제 금</td> <td rowspan="4">신 축</td> <td rowspan="4">농업용</td> <td rowspan="2">주 택</td> <td>100m'이하</td> <td>10/100</td> </tr> <tr> <td>100m'초과</td> <td>20/100</td> </tr> <tr> <td rowspan="2">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등</td> <td>200m'미만</td> <td>10/100</td> </tr> <tr> <td>200m'이상</td> <td>20/100</td> </tr> <tr> <td rowspan="3">증 축</td> <td rowspan="3">비농업용</td> <td>주 택</td> <td>-</td> <td>20/100</td> </tr> <tr> <td>공 장</td> <td>-</td> <td>30/100</td> </tr> <tr> <td>기 타</td> <td>-</td> <td>50/100</td> </tr> <tr> <td rowspan="3">대 수 선</td> <td rowspan="3">비농업용</td> <td rowspan="2">농업용</td> <td>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등</td> <td>50m'이하</td> <td>10/100</td> </tr> <tr> <td></td> <td>50m'초과</td> <td>20/100</td> </tr> <tr> <td>주 택</td> <td>-</td> <td>20/100</td> </tr> <tr> <td rowspan="3">파 태 료</td> <td rowspan="3">신 축</td> <td>공 장</td> <td>-</td> <td>30/100</td> </tr> <tr> <td>기 타</td> <td>-</td> <td>50/100</td> </tr> <tr> <td>농업용</td> <td>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등</td> <td>100m'이하</td> <td>10/100</td> </tr> <tr> <td rowspan="3">증 축</td> <td rowspan="3">대 수 선</td> <td rowspan="2">농업용</td> <td></td> <td>200m'미난</td> <td>10/100</td> </tr> <tr> <td>기 타</td> <td>-</td> <td>20/100</td> </tr> <tr> <td>농업용</td> <td>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등</td> <td>50m'이하</td> <td>10/100</td> </tr> <tr> <td></td> <td>기 타</td> <td>-</td> <td>-</td> <td>20/100</td> </tr> </tbody> </table>	구	분	분	류	경감율	비 고	이 행 강 제 금	신 축	농업용	주 택	100m'이하	10/100	100m'초과	20/100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등	200m'미만	10/100	200m'이상	20/100	증 축	비농업용	주 택	-	20/100	공 장	-	30/100	기 타	-	50/100	대 수 선	비농업용	농업용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등	50m'이하	10/100		50m'초과	20/100	주 택	-	20/100	파 태 료	신 축	공 장	-	30/100	기 타	-	50/100	농업용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등	100m'이하	10/100	증 축	대 수 선	농업용		200m'미난	10/100	기 타	-	20/100	농업용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등	50m'이하	10/100		기 타	-	-	20/100				
구	분	분	류	경감율	비 고																																																																								
이 행 강 제 금	신 축	농업용	주 택	100m'이하	10/100																																																																								
				100m'초과	20/100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등	200m'미만	10/100																																																																								
				200m'이상	20/100																																																																								
증 축	비농업용	주 택	-	20/100																																																																									
		공 장	-	30/100																																																																									
		기 타	-	50/100																																																																									
대 수 선	비농업용	농업용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등	50m'이하	10/100																																																																								
				50m'초과	20/100																																																																								
		주 택	-	20/100																																																																									
파 태 료	신 축	공 장	-	30/100																																																																									
		기 타	-	50/100																																																																									
		농업용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등	100m'이하	10/100																																																																								
증 축	대 수 선	농업용		200m'미난	10/100																																																																								
			기 타	-	20/100																																																																								
		농업용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등	50m'이하	10/100																																																																								
	기 타	-	-	20/100																																																																									

※ 적발 보고건수 : 총 10건

- 공장 : 1건
- 주택 : 7건
- 근생 : 2건

조

치

사

항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체납세 징수 철저	소관부서	회 천 읍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한 조치로 공매등 강제 징수 방법을 수차례 결쳐 시행 할 것을 촉구 하였으나 채권만 압류 하였을뿐 이를 이행치 않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군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채권이 확보된 물건중 일반 징수가 어려운 체납 건은 공매 등을 신청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 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체납세 현황 및 채권확보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 현황('99.10.30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수 : 11,060건 • 금액 : 1,409,837천원 ○ 압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수 : 3,459건 • 금 액 : 1,235,826천원 ○ 공매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수 : 197건 • 금 액 : 368,096천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방법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증 채권확보 물건에 대하여는 공매의 실익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후 공매의뢰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음.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체납세 징수철저	소관부서	주 내 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한 조치로 공매등 강제 징수방법을 수차에 걸쳐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채권만 압류하였을뿐 이를 이행치 않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군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채권이 확보된 물건중 일반징수가 어려운 체납건은 공매등을 신청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치	<p><input type="checkbox"/> 체납세 현황 압류·강제징수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 현황(99.10.31일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계 : 3,740천원 545,196천원 • 과년도 : 2,277건 307,110천원(이월액 : 612,672천원) • 현년도 : 1,463건 238,086천원 		
조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정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액 : 612,672천원 • 징수액 : 127,759천원 • 정리액 : 207,7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처분 : 170,046천원 - 감액 : 37,674천원 ○ 압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계 : 765건 525,788천원 • 부동산 : 123건 330,578천원 • 차량 : 630건 155,117천원 • 전화가입권 압류 : 12건 40,093천원 ○ 강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의뢰 : 6건 12,292천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72건 117,039천원 <p>※ '99.10.31 현재 양주군의 체납액 정리실적 1위를 차지함.</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체납세 징수 철저	소관부서	온 현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한 조치로 공매등 강제 징수방법을 수차에 걸쳐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채권만 암류하였을 뿐 이를 이행치 않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대에 이르고 있어 군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채권이 확보된 물건등 일반 징수가 어려운 체납건은 공매 등을 신청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 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99 체납세 징수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 현황('99.3.18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06건 1,730,193천원(국세포함) ○ 체납세 정리실적 : 2,291건 764,143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액 : 1,682건 131,073천원 • 결손액 : 426건 620,756천원 • 감 액 : 183건 12,314천원 ○ 미징수액 : 3,915건 966,050천원 ○ 공매의뢰 : 11건 26,644천원 <p><input type="checkbox"/>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 징수 독려반 운영 ○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암류, 공매 ○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 번호판 영치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체납세 징수철저	소관부서	남 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한 조치로 공매 등 강제 징수방법을 수차례 결쳐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채권만 압류하였을뿐 이를 이행치 않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군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채권이 확보된 물건 중 일반 징수가 어려운 체납 건은 공매등을 신청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년도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체 납 액	도 세
	남 면	838,553	419,325
	군 세		419,228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전직원을 동원하여 다소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나, 아직 9억여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치 못한 바,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 추진에 매진하고자 함.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현황('99.10.30 기준) : 1,387건 540,713천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계 : 2,450건 297,840천원 • 징수실적 : 1,078건 173,618천원 • 결손처분 : 1,372건 124,202천원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지방세 납부예고 및 형사고발 예고 : 44건 23,202천원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418건 10,123천원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 48건 81,243천원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현황(국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계 : 951건 493,382천원 • 부동산 : 219건 400,429천원 • 차 량 : 821건 92,953천원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집중징수기간 설정 운영 : 년 4회 •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면장과 재무담당주사 징수담당제 운영 •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월 2회) : 20회 • 고질체납자 채권확보 및 공매천분 의뢰 또는 형사고발 의뢰 • 도산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징구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체납세 징수 철저	소관부서	광 적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공매 등 강제 징수방법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 채권만 압류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군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음. ○ 앞으로는 채권이 확보된 물건중 일반징수가 불가능한 체납건에 대해서는 공매신청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 현황('99.10.31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 : 9,279건 1,054,951천원 ○ 공매의뢰 건수 : 6건 23,167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계 : 1,332건 495,818천원 - 부동산 : 186건 253,193천원 - 차 량 : 1,146건 242,625천원 • 물건이 없거나 소액 : 7,941건 535,966천원 ○ 향후 지속적으로 고액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매의뢰 하여 조치함으로써 체납세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체납세 징수 철저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의 징수를 위한 조치로 공매 등 강제징수방법을 시행하여야 하나 채권만 압류하였을 뿐 이를 시행하지 않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재산등의 압류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반징수가 어려운 체납건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경우 기 공매를 의뢰한바 있으나, 재산가치 및 선순위 채권여부등을 판단후 실익이 없어 공매예고만을 실시하였음. ○ 이후에는 공매후 배당의 실익이 있는지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공매를 의뢰하고자 함. ○ 체납세 현황 및 채권확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 현황('99.3월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14건 657,237천원 • 압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계 : 176건 65,292천원 - 부동산 : 134건 49,760천원 - 차량 : 42건 15,532천원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체납세 징수 철저	소관부서	장 흥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한 조치로 공매 등 강제 징수방법을 수차에 걸쳐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채권만 압류하였을뿐 이를 이행치 않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군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채권이 확보된 물건중 일반징수가 어려운 체납건은 공매 등을 신청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질체납자에 채권확보된 물건은 대부분 후순위 채권이어서 공매를 실시하여도 별 실익이 없는 관계로 공매에 어려움이 따름 ○ 향후 조기채권 확보는 물론 선순위 채권확보된 물건은 과감하게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 체납세 현황 및 채권확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확보 : 부동산 압류 31건 93.5천원 • 번호판 영치 : 67대 22,851천원 • 체납액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처분 의뢰 : 38건 128,348천원 - 징수액 : 1,239건 69,956천원 • 공매 의뢰현황 : 3건 71,968천원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알뜰 시장 운영 재검토	소관부서	회 천 읍
지 적 사 항	<p>○ 현재 각읍면 부녀회 등 각급 단체가 수시로 개최하는 알뜰시장 운영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남면 부녀회는 재활용 촉진 및 교환 등 알뜰시장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교적 모범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타 읍면은 이를 도입하여 사업효과 거양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알뜰시장 운영은 기부금 모금이 목적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p>		
조 치 결 과	<p>○ '99년도 우리읍 알뜰시장 운영실적 없음.</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알뜰시장 운영 제검토	소관부서	주 내 면																																
지 적 사 항	<p>○ 현재 각 읍·면 부녀회등 각급 단체가 수시로 개최하는 알뜰시장 운영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남면 부녀회는 재활용 촉진 및 교환 등 알뜰시장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교적 모범적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읍·면은 이를 도입하여 사업효과 거양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알뜰시장 운영은 기부금 모금이 목적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상품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p>																																		
조 치 결 과	<p>□ '99 알뜰시장 운영 계획</p> <p>○ 알뜰시장 운영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기 [수 시 : 3월, 6월, 9월, 12월 중 (분기별로 1회)] [상 설 : 3월부터 12월] • 장 소 [수 시 : 개최일정별로 수시 선정(지역주민 다수이용 장소)] [상 설 : 매장을 추후 선정] <p>○ 알뜰시장 운영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조성 수입 대 지출내역(수시만 운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운영일</th> <th rowspan="2">장 소</th> <th rowspan="2">수 입 (순이익)</th> <th colspan="2">자 출</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금 액</th> <th>내 역</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1,388,000</td> <td>1,380,000</td> <td></td> <td></td> </tr> <tr> <td>3. 9</td> <td>만송리 덕현분소옆</td> <td>423,000</td> <td>440,000</td> <td>• 10세대에 백마 20kg씩 전달</td> <td></td> </tr> <tr> <td>6. 7</td> <td>만송리 덕현분소옆</td> <td>526,450</td> <td>500,000</td> <td>• 소녀가장 이은선 집수리비</td> <td></td> </tr> <tr> <td>9. 6</td> <td>만송리 덕현분소옆</td> <td>438,500</td> <td>440,000</td> <td>• 20세대에 백마 10kg씩 전달</td> <td></td> </tr> </tbody> </table> <p>• 운영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물품 직거래의 활성화 (수시 중고물품 모집) - 재활용비누 제조등으로 재활용품 활용 - 공장직영 물품구입으로 도매가 이하로 판매(의류, 주방용품, 생필품등) <p>○ 알뜰시장 운영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4/4분기 알뜰시장 운영은 12월중에 실시예정임. 	운영일	장 소	수 입 (순이익)	자 출		비고	금 액	내 역	합계		1,388,000	1,380,000			3. 9	만송리 덕현분소옆	423,000	440,000	• 10세대에 백마 20kg씩 전달		6. 7	만송리 덕현분소옆	526,450	500,000	• 소녀가장 이은선 집수리비		9. 6	만송리 덕현분소옆	438,500	440,000	• 20세대에 백마 10kg씩 전달			
운영일	장 소				수 입 (순이익)	자 출		비고																											
		금 액	내 역																																
합계		1,388,000	1,380,000																																
3. 9	만송리 덕현분소옆	423,000	440,000	• 10세대에 백마 20kg씩 전달																															
6. 7	만송리 덕현분소옆	526,450	500,000	• 소녀가장 이은선 집수리비																															
9. 6	만송리 덕현분소옆	438,500	440,000	• 20세대에 백마 10kg씩 전달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알뜰시장 운영 제검토	소관부서	은현면
지적사항	<p>○ 현재 각 읍·면 부녀회등 각급 단체가 수시로 개최하는 알뜰시장 운영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남면 부녀회는 재활용 촉진 및 교환등 알뜰시장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교적 모범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읍·면은 이를 도입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알뜰시장 운영은 기부금 모금이 목적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람.</p>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알뜰시장 운영 개선</p> <p>○ 현황 • '98 알뜰시장 운영 : 2회 • 목적 : 불우이웃 및 결식아동 돋기 기금 마련 • 수입액 : 2,500천원</p> <p>○ 목적 • 물물교환 및 재활용 촉진 • 학교별 불우가정 결식아동 돋기 일환으로 급식비 지원 ※ 은현(5), 상쾌(2), 봉암(3) : 급식비 1인당 22,000원 • 월동기 불우이웃 돋기</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알뜰시장 운영 재검토		소관부서	남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각 읍·면 부녀회등 각급 단체가 수시로 개최하는 알뜰시장 운영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남면 부녀회는 재활용 촉진 및 교환등 알뜰시장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교적 모범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읍·면은 이를 도입하여 사업효과 거양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알뜰시장 운영은 기부금 모금이 목적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상품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뜰시장 운영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주관단체</th> <th>설치장소</th> <th>운영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남면부녀회</td> <td>남면농협 옆</td> <td>주 1회 운영하며, 각 리부녀회장이 순번제로 자원봉사</td> <td></td> </tr> </tbody> </table>				주관단체	설치장소	운영 방법	비고	남면부녀회	남면농협 옆	주 1회 운영하며, 각 리부녀회장이 순번제로 자원봉사																																													
주관단체	설치장소	운영 방법	비고																																																					
남면부녀회	남면농협 옆	주 1회 운영하며, 각 리부녀회장이 순번제로 자원봉사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뜰시장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모금이 목적이 아닌 운영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는 5일장(2, 7일)이 설 때에·교환대를 마련하여 재활용 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이 수익금은 현재 부녀회에서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하예성 사랑의 집 거주자들 목욕시키기 활동 및 방문시에 세제 및 라면, 과일등 구입비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뜰시장 운영실적('99.1월~10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운영 일수 (일시, 장소)</th> <th rowspan="2">봉사 인원</th> <th colspan="6">중 고 물 품 교 환 및 판 매</th> <th colspan="2">농산물직거래판매</th> </tr> <tr> <th>계</th> <th>교환</th> <th>무료 제공</th> <th>판매 수량</th> <th>판매액</th> <th>이익금</th> <th>판매액</th> <th>이익금</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30</td> <td>364</td> <td>163</td> <td>18</td> <td>25</td> <td>120</td> <td>70</td> <td>55</td> <td>3,132</td> <td>157</td> </tr> <tr> <td>상설운영</td> <td>29</td> <td>35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2,800</td> <td>145</td> </tr> <tr> <td>수시운영</td> <td>1</td> <td>20</td> <td>163</td> <td>18</td> <td>25</td> <td>120</td> <td>70</td> <td>55</td> <td>242</td> <td>12</td> </tr> </tbody> </table>				구 분	운영 일수 (일시, 장소)	봉사 인원	중 고 물 품 교 환 및 판 매						농산물직거래판매		계	교환	무료 제공	판매 수량	판매액	이익금	판매액	이익금	합 계	30	364	163	18	25	120	70	55	3,132	157	상설운영	29	354	-	-	-	-	-	-	2,800	145	수시운영	1	20	163	18	25	120	70	55	242	12
구 분	운영 일수 (일시, 장소)	봉사 인원	중 고 물 품 교 환 및 판 매						농산물직거래판매																																															
			계	교환	무료 제공	판매 수량	판매액	이익금	판매액	이익금																																														
합 계	30	364	163	18	25	120	70	55	3,132	157																																														
상설운영	29	354	-	-	-	-	-	-	2,800	145																																														
수시운영	1	20	163	18	25	120	70	55	24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예성 방문 봉사활동('99.1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회수 : 주 1회 연 32회 • 방문 인원수 : 1회당 4~5명 연 144명 • 봉사활동 내역 : 목욕, 빨래 등 노력봉사 및 세제, 라면, 김치, 과일, 음료 등 제공 • 방문시 지출금 : 1회당 20~25천원 연 740천원 (알뜰시장 이익금 및 부녀회 기금에서 지출)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알뜰시장 운영 재검토	소관부서	광 적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각 읍면 부녀회 등 각급 단체가 수시로 개최하는 알뜰시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남면의 운영방법을 도입하여 사업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고 ○ 특히 알뜰시장 운영은 기부금 모금이 목적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상품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도 운영실적 : 1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 순수익 776,000원 ○ 지역 농민이 땀흘려 가꾼 농산물을 구입 판매하는 등 기존의 운영방법에서 일부 개선되었으나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의 구매력이 부족하여 아직 미흡한 상태임. ○ 향후 주민에게 알뜰시장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상품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주민다수가 참여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알뜰시장 운영 재검토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p>○ 현재 각 읍.면부녀회등 각급단체가 수시로 개최하는 알뜰시장운영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웃 남면 부녀회는 재활용촉진 및 교환 등 알뜰시장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교적 모범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읍.면은 이를 도입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알뜰시장운영은 기부금 모금이 목적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p>		
조치결과	<p>○ 백석면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알뜰시장은 연 2회(상하반기)씩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리별 또는 아파트 부녀회등 참여 단체를 확대 적용하여 자발적운영을 유도하며 중고 생활용품 교환 상설(또는 수시)알뜰매장을 운영하여 알뜰시장의 근본적인 취지인 재활용품의 자원화를 통하여 절약의식을 고취 시키고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을방송.리장회의.부녀회의를 통한 주민홍보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기타 모범사례들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알뜰시장 운영 재검토	소관부서	장 흥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각 읍·면 부녀회 등 각급 단체가 수시로 개최하는 알뜰시장 운영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남면 부녀회는 재활용 촉진 및 교환 등 알뜰시장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교적 모범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읍·면은 이를 도입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알뜰시장 운영은 기부금 목적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상품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조 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알뜰시장이 운영된 것이 사실이며 또한 주된 내용이 음식물 판매 행위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향후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 면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교환판매를 통한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고 그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99년도에는 장흥면 부녀회에서는 작년수해로 여건상 알뜰시장 운영을 못하였으며, 향후 개최시에는 재활용품 교환판매를 통한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고 그 수익금으로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에게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각종 동향보고시 의원에게 통보	소관부서	회천읍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향을 군에 보고하면서 일부 읍면은 이를 지역의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의원에게도 통보하여 함께 지역관리를 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되는 동향에 대하여는 팩시밀리 또는 유선을 통하여 수시로 지역 의원에게 통보하고 있음.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각종 동향보고시 의원에게 통보 요망	소관부서	주내면
지적사항	<p>○ 읍·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향을 군에 보고하면서 일부 읍·면은 이를 지역 의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의원에게도 통보하여 함께 지역관리를 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람.</p>		
조치결과	<p>□ '99 주내면 각종 동향보고 현황</p> <p>○ '99 동향보고 분야별 현황('99.10.31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행사 : 39건 • 회의 : 72건 • 화재 : 없음 • 기타 : 13건 • 총 : 124건(월평균 12건) <p>○ '99 동향보고 의원에게 통보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의원에게 즉시 동향보고를 하여 의원이 지역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p>□ '99 향후 동향보고 개선방향</p> <p>○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원에게 동향보고를 하여 의원이 지역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각종 동향 보고시 의원에게 통보요망	소관부서	은 현 면
지 적 사 항	<p>○ 읍·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향을 군에 보고하면서 읍·면은 이를 지역 의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의원에게도 통보하여 함께 지역관리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p>		
조 직 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지역 동향 보고</p> <p>○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동향 보고시 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여 지역 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유지</p> <p>○ 지역의원과 유기적인 협조 및 지역문제점, 각종 사항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향 보고 ————— 군청 └ 동향 보고시 통보 ————— 지역의원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각종동향보고시 의원에게 통보요망	소관부서	남 면
지 적 사 항	<p>○ 읍·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향을 군에 보고하면서 일부 읍·면은 이를 지역의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의원에게도 통보하여 지역관리를 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p>		
조 치 결 과	<p>○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편익사업등 모든 현안 사항을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의원님과도 수시 연락을 통하여 각종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각종 동향보고시 의원에게 통보요망	소관부서	·광 적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향을 군에 보고하면서 ○ 일부 읍.면은 이를 지역 의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 향후 의원에게도 통보하여 함께 지역관리를 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광적면에서는 지역내의 동향관리에 대해서는 항상 군의원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 읍·면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동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군의원이 수시로 읍.면을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정확한 정황을 판단하여 군에 보고하고 있음. ○ 향후 지속적으로 단지 동향분야 뿐만 아니라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항상 군의원과 의견을 수렴 해가면서 전 직원은 물론 전 주민의 동향 관리 모니터 요원화에 적극 노력하겠음. ○ 동향보고 총건수('99.10.31 기준) : 64건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각종 동향보고시 의원에게 통보 요망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p>○ 읍.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향을 군에 보고하면서 일부 읍.면은 이를 지역 의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의원에게도 통보하여 함께 지역관리를 하는데 참고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p>		
조치	<p>○ 현 우리면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지역발전과 관련한 모든 현안사항을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으나 관내에 발생하는 동향 보고시 군의 관련부서 뿐만아니라 의원님께도 수시 연락을 취하여 각종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p>		
결과			
과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각종 동향보고시 의원에게 통보요망	소관부서	장 흥 면
지 적 사 항	<p>○ 읍·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향을 군에 보고하면서 일부 읍·면은 이를 지역의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의원에게도 통보하여 함께 지역관리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p>		
조 치 결 과	<p>○ 향후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향보고 사항을 의원께도 함께 통보하여 지역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음</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공동묘지 관리 철저	소관부서	회 천 읍
지 적 사 항	<p>○ 읍·면이 관리하는 공설묘지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외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호화 묘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도 외지인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시기 바람.</p>		
조 치 결 과	<p>○ 공동묘지 매장신고시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외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99.7.12~'99.9.2까지 묘지 실태조사 결과 962기의 묘가 있으나 호화묘지 및 기준면적 초과 묘지는 없었으며, 이후로도 기준면적 초과 묘지 및 호화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공설묘지 사용실태		소관부서	주 내 면																					
지 적 사 항	○ 읍·면이 관리하는 공설묘지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외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호화묘지와 기준면적 초과한 묘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도 외지인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 하시기 바람.																								
□ 공설묘지 현황 및 외부인 사용실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 분 \ 묘지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유양리</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어둔리</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마전리</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광사리</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삼승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관내자 매장기수</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2,279</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90</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95</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686</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247</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061</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관외자 매장기수</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2</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2</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tr> </tbody> </table>					구 분 \ 묘지명	계	유양리	어둔리	마전리	광사리	삼승리	관내자 매장기수	2,279	190	95	686	247	1,061	관외자 매장기수	12			12		
구 분 \ 묘지명	계	유양리	어둔리	마전리	광사리	삼승리																			
관내자 매장기수	2,279	190	95	686	247	1,061																			
관외자 매장기수	12			12																					
□ 기준면적 초과 사용실태																									
<p>○ 현재 관내 5개 공설묘지에는 기준을 초과한 호화 묘지의 사용은 없으며 관내거주자 만이 사용토록 신고수리함과 아울러 묘지일제조사를 하여 연고자가 발견될시 이전토록 조치하겠음.</p>																									
□ 향후조치 계획																									
<p>○ 수시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므로서 외부인 사용을 금지 토록 철저히 노력하겠으며 리장 및 새마을 지도자를 활용 무단사용금지에 만전을 기하겠음.</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공동묘지 관리 철저	소관부서	은 현 면
지 적 사 항	<p>○ 읍·면이 관리하는 공동묘지 사용실태는 조사해 본 결과 외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호화묘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도 외지인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시기 바람.</p>		
조 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공동묘지 관리</p> <p>○ 개 소 수 : 4개소 1,000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 공동묘지 : 73기 • 선암 공동묘지 : 24기 • 도하 공동묘지 : 73기 • 하패 공동묘지 : 830기 <p>○ 묘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순찰 강화 • 호화묘지 및 기준 면적 초과 묘지 단속 • 불법 공동묘지 사용자 단속 및 신고토록 계도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공동 묘지 관리 철저	소관부서	남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지사용을 외부인이 사용하는 경우와 또한 호화묘지와 기존면적을 초과한 묘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어 조사 후 시정조치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묘지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th style="width: 25%;">공동묘지(개소)</th><th style="width: 25%;">매장기수</th><th style="width: 25%;">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남 면</td><td style="text-align: center;">9</td><td style="text-align: center;">1,100</td><td></td></tr> </tbody> </table>		구 분	공동묘지(개소)	매장기수	비 고	남 면	9	1,100	
구 분	공동묘지(개소)	매장기수	비 고								
남 면	9	1,100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화장 신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도 : 매장 49기, 화장 6기 • 1999년도 : 매장 10기, 화장 14기 ○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요원 4명을 확보, 시정사항 조치 • 묘지 일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99.3.2~3.31 - 2차 : '99.7.13~8.12 •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지 실태조사원 확보 : 1차 4명, 2차 1명 - 조사기수 : 공동묘지 9개소 1,100기 - 묘지대장, 묘적부 작성 : 1,100기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공동묘지 관리 철저	소관부서	광적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외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 또한 호화 묘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에도 외지인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 하기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지인의 불법매장시 주민신고토록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구역지정 조사반 편성 : 5개반 10명 ○ 기준면적 초과 및 호화 묘지에 대한 집중 조사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99.7.19~7.30 • 면적초과 및 호화묘지 없음. ○ 불법 매장묘소 발견시 개장경고판 설치 :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납리, 광석리, 우고리, 덕도리, 석우리 공동묘지 ○ 공동묘지(5개소) 개별묘에 대하여 관리번호, 표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기간 : '99.8.31일한 • 설치현황 : 총 756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납리 공동묘지 : 119기 - 광석리 공동묘지 : 31기 - 우고리 공동묘지 : 256기 - 덕도리 공동묘지 : 190기 - 석우리 공동묘지 : 160기 ○ 공동묘지 주변 및 진입로 정리 · 제초작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99.8.16~8.20(5일간)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공동묘지 관리 철저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p>○ 읍·면이 관리하는 공설묘지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외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호화묘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도 외지인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p>		
조치결과	<p>○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쓰는 사례가 발견 되었을 경우 즉시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화를 최소화하겠습니다며, 관내 기존 묘지 조사결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만한 기준초과 묘지나 호화묘지는 과악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찰과 홍보강화로 불법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공동묘지 관리철저	소관부서	장 흥 면
지 적 사 항	<p>○ 읍·면이 관리하는 공설묘지 사용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외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호화묘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도 외지인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p>		
조 치 결 과	<p>○ '99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동묘지 사용실태 등 전수조사한 결과 호화묘지나 기준면적 초과한 묘지는 없으며, 향후 불법묘지 및 호화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축산농가 설치 정화조 관리 철저	소관부서	회 천 읍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는 설치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농가가 많고 신고대상 미만 농가에서도 분뇨를 여과 없이 방류함으로써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바, 군은 '99년도에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순찰함을 비치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하니 읍면장도 군과 협조하여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읍 규제미만 축산농가는 20농가로 분뇨처리시설을 일제히 조사하여 카드 관리화 하고 있음. ○ 또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광견병 예방접종시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축산농가 설치 정화조 관리	소관부서	주내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화조는 설치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농가가 많고 신고대상 미만 농가에서도 분뇨를 여과없이 방류하므로써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바 군은 99년도에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순찰함을 비치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하니 읍·면장도 군과 협조하여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조 직 자 치	<p>□ 축산농가설치 정화조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 축산 폐수장 이용 농가 : 32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비 활용 농가 : 90농가 - 기타 처리 농가 : 18농가 총 계 : 140농가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 정화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축산농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화조는 설치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지 않고 있는 농가가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군과 협동으로 하천오염의 주요인이 되는 축산분뇨 무단방류 농가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축산 농가 설치 정화조 관리 철저	소관부서	은 현 면
지 적 사 항	<p>○ 축산농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화조는 설치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농가가 많고 신고대상 미만 농가에서도 분뇨를 여과 없이 방류함으로써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바 군은 '99년도에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순찰함을 비치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하니 읍·면장도 군과 협조하여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p>		
조 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축산 폐수 정화조 관리</p> <p>○ 축산 농가가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축산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 폐수 무단 방류 지도 단속 • 정화조 설치 농가 정상적 운영 지도 점검 • 축산 폐수 인근 농지 무단 적치 행위 단속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축산농가 설치 정화조 관리 철저	소관부서	남 면																							
지 적 사 항	<p>○ 축산농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화조는 설치 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농가가 많고 신고 대상 미만 농가에서도 분뇨를 여과없이 방류하므로 써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임.</p>																									
조 치 결 과	<p>○ 축산 농가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축 종</th> </tr> <tr> <th>한 우</th> <th>유 우</th> <th>고기소</th> <th>돼 지</th> <th>닭</th> </tr> </thead> <tbody> <tr> <td>가 구 수</td> <td>58</td> <td>65</td> <td>22</td> <td>36</td> <td>17</td> </tr> <tr> <td>마 리 수</td> <td>1,161</td> <td>2,179</td> <td>365</td> <td>21,990</td> <td>189,970</td> </tr> </tbody> </table> <p>○ 축산 농가 정화조 설치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98가구중 135농가 설치 (설치율 63%) - 허가대상 9농가중 9농가 정화조 설치 (100%) - 신고대상 75농가중 60농가 정화조 설치 (80%) - 간이대상 95농가중 58농가 정화조 설치 (61%) - 규제미만 대상 19농가중 3농가 정화조 설치(15%)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영농교육 및 가축 방역시 분뇨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한 교육 실시(3. 8~ 3.12 소탄저, 기종저 방역시 교육실시) •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 지도방문을 통한 정화조 사용여부 점검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오제스키방역시 교육실시) • 신고대상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를 유도 • 그외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분뇨 무단방류여부를 지속적 감시 관리 •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정화조 시설 설치 유도 • '99. 3. 2~ 4.30 축산분뇨처리시설조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구 분	축 종					한 우	유 우	고기소	돼 지	닭	가 구 수	58	65	22	36	17	마 리 수	1,161	2,179	365	21,990	189,970
구 분	축 종																									
	한 우	유 우	고기소	돼 지	닭																					
가 구 수	58	65	22	36	17																					
마 리 수	1,161	2,179	365	21,990	189,970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축산농가 설치 정화조 관리 철저	소관부서	광 적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는 설치 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농가가 많고 ○ 신고대상 미만 농가에서도 분뇨를 여과 없이 방류함으로써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음. 		
조 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축산분뇨 처리시설 실태조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완료일 : '99. 5. 11 ○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 농가 : 209농가 • 정화조 설치농가 : 118농가 • 정화조 미설치 농가 : 91농가 (대부분 퇴비화, 액비화 처리 자가소비 및 퇴비공장 반출) ○ 처리결과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농가 카드화 관리하고 규제미만 농가 개별지도 · 점검 • 지속적 지도 · 점검으로 정화조 설치 유도 및 규제미만 농가 무단방류 방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축산농가 설치 정화조 관리 철저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p>○ 축산농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화조는 설치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농가가 많고 신고대상 미만 농가에서도 분뇨를 여과없이 방류하므로써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바 군은 ‘99년도에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순찰함을 비치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하니 읍·면장도 군과 협조하여 하천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p>		
조치결과	<p>○ 군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 및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축산농가 설치 정화조 관리 철저	소관부서	장 흥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화조는 설치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농가가 많고 신고대상 미만 농가에서도 분뇨를 여과없이 방류하므로써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바 군은 '99년도에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순찰함을 비치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하니 읍·면장도 군과 협조하여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조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의 정화조 설치신고시 군청에서 정화조 준공과 동시에 순찰표를 교부하고, 면에서는 사후관리 및 순찰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 목	한시적 생활 보호대상자 관리 철저	소관부서	회 천 읍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와 경제난으로 인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시책의 홍보 및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되는 바, 생활고를 겪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생활 보호대상자 신청과 관련하여 입간판도 설치하였고 리 담당을 활용 적극 신청을 받고 있음. 또한 소득 조회 및 재산조사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한시적 생활보호 책정 현황('99.10.31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목표 : 총 996명(생계 441, 자활 555) • '99.10.31 현재 : 총 1,04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 168가구 448명 - 자활 : 204가구 595명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철저				소관부서	주 내 면																												
지적사항	<p>○ 수해와 경제난으로 인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시책의 홍보 및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생활고를 겪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p>																																	
	<p>○ 98년 책정현황</p>					(단위: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계</th> <th colspan="3">생활보호</th> <th colspan="3">자활보호</th> </tr> <tr> <th>목표</th> <th>책정</th> <th>실적율</th> <th>목표</th> <th>책정</th> <th>실적율</th> <th>목표</th> <th>책정</th> <th>실적율</th> </tr> </thead> <tbody> <tr> <td>416</td> <td>423</td> <td>101%</td> <td>208</td> <td>258</td> <td>124%</td> <td>208</td> <td>165</td> <td>79.3</td> </tr> </tbody> </table>				계			생활보호			자활보호			목표	책정	실적율	목표	책정	실적율	목표	책정	실적율	416	423	101%	208	258	124%	208	165	79.3			
계			생활보호			자활보호																												
목표	책정	실적율	목표	책정	실적율	목표	책정	실적율																										
416	423	101%	208	258	124%	208	165	79.3																										
지적사항	<p>○ 99년 책정인원(10.31 현재)</p>					(단위: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계</th> <th colspan="3">생활보호</th> <th colspan="3">자활보호</th> </tr> <tr> <th>목표</th> <th>책정</th> <th>실적율</th> <th>목표</th> <th>책정</th> <th>실적율</th> <th>목표</th> <th>책정</th> <th>실적율</th> </tr> </thead> <tbody> <tr> <td>552</td> <td>485</td> <td>87.8</td> <td>258</td> <td>248</td> <td>93</td> <td>294</td> <td>245</td> <td>83.8</td> </tr> </tbody> </table>				계			생활보호			자활보호			목표	책정	실적율	목표	책정	실적율	목표	책정	실적율	552	485	87.8	258	248	93	294	245	83.8			
계			생활보호			자활보호																												
목표	책정	실적율	목표	책정	실적율	목표	책정	실적율																										
552	485	87.8	258	248	93	294	245	83.8																										
지적사항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 취업 및 영세자영업 운영 등으로 자립 기반 및 생활이 향상되어지는 추세에 있어 현재 보호하고 있는 세대를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없는 세대는 보호종지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향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한시적 생활 보호대상자 관리 철저	소관부서	온 현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와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시책의 홍보 및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생활고를 겪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조 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보호 대상자 : 76가구 194명 • 자활보호 대상자 : 39가구 128명 ○ 한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또는 가족의 신청조사 • 리담당자 직원 및 각리장 직권조사 ○ 조사기간 : 년중 ○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주민 및 실직자 • 폐질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정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안내문 발송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소관부서	남 면																																								
지 적 사 항	<p>○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 요망</p>																																										
조 치 결 과	<p>○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보호구분</th><th style="width: 33%;">보호대상자 현황</th><th style="width: 33%;">비 고</th></tr> </thead> <tbody> <tr> <td>계</td><td>207가구 457명</td><td></td></tr> <tr> <td>생계보호</td><td>112가구 205명</td><td></td></tr> <tr> <td>자활보호</td><td>95가구 252명</td><td></td></tr> </tbody> </table> <p>○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급현황(1999년도) (단위: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4.28%;">구분</th><th style="width: 14.28%;">가구수</th><th style="width: 14.28%;">계</th><th style="width: 14.28%;">생계비</th><th style="width: 14.28%;">설날위로금</th><th style="width: 14.28%;">추석위로금</th><th style="width: 14.28%;">월동대책비</th></tr> </thead> <tbody> <tr> <td>계</td><td>196</td><td>240,207</td><td>211,346</td><td>6,015</td><td>5,600</td><td>17,246</td></tr> <tr> <td>생계보호</td><td>103</td><td>182,531</td><td>153,670</td><td>6,015</td><td>5,600</td><td>17,246</td></tr> <tr> <td>자활보호</td><td>93</td><td>57,676</td><td>59,676</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 지속적인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발굴과 기 책정된 대상자중 재취업 및 소득 향상자를 조사하여 보호중지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보호 중지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생계보호 : 15가구 56명 - 한시적 자활보호 : 12가구 42명 			보호구분	보호대상자 현황	비 고	계	207가구 457명		생계보호	112가구 205명		자활보호	95가구 252명		구분	가구수	계	생계비	설날위로금	추석위로금	월동대책비	계	196	240,207	211,346	6,015	5,600	17,246	생계보호	103	182,531	153,670	6,015	5,600	17,246	자활보호	93	57,676	59,676	-	-	-
보호구분	보호대상자 현황	비 고																																									
계	207가구 457명																																										
생계보호	112가구 205명																																										
자활보호	95가구 252명																																										
구분	가구수	계	생계비	설날위로금	추석위로금	월동대책비																																					
계	196	240,207	211,346	6,015	5,600	17,246																																					
생계보호	103	182,531	153,670	6,015	5,600	17,246																																					
자활보호	93	57,676	59,676	-	-	-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철저	소관부서	광적 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와 경제난으로 인하여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 동 시책의 홍보 및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생활고를 겪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을 위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장회의시 면정회보 게재 : 3회 • 남녀 새마을 지도자회의 : 4회 • 기관단체장 회의 : 1회 •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 1회 • 마을 앰프방송 : 1일 2회씩 6회(12개리×12회) ○ 관내·외의 각급 학교에 대한 결식학생 현황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양중학교등 16개 학교 ○ 관내 종교단체 등을 통한 불우이웃 의뢰 : 가남교회등 9개교회 ○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현황 ('99. 3. 1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보호 : 72가구 182명 • 자활보호 : 80가구 263명 <li style="margin-left: 20px;">} 152가구 445명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철저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와 경제난으로 인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시책의 홍보 및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생활고를 겪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월 2회이상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리장회의 각종 단체회의시 중점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체.학교.종교단체에도 협조를 의뢰하여 당초 저조했던 사업실적이 현재(99.2.20기준) 545명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져 경제적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민홍보강화로 어려운 가정이 보호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철저	소관부서	장 흥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와 경제난으로 인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시책의 홍보 및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생활고를 겪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11월 7일 이전에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인원이 7가구 18명이었으나 그후 각종 홍보 및 결식아동, 의료보험 장기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하여 99년 2월 20일 현재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186가구에 530명과 한시적 자활대상자 56가구에 189명 등 총 242가구에 719명을 책정하여 의료보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후 한시생계 2가구 5명, 자활 17가구 45명 신규 책정, 생계대책으로 매월 일정액의 생계구호비를 지급하고 있고 향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찾아 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음 ○ '99년 2월 20일 현재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186가구에 530명,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56가구에 189명, 총 242가구에 719명이며, 이후 한시적 생계 2가구 5명, 한시적 자활 17가구 45명, 총 261가구에 769명을 책정하여 의료보호 및 생계대책으로 생계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음. ○ 보호대상자중 수해로 보호를 받아왔으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안정과 소득효과로 105가구 402명을 보호중지 하였으며, 향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음.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관행 개선	소관부서	회 천 읍
지 적 사 항	<p>○ 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읍면은 해당 의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에 정성을 기울였으나 일부 읍면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는 실정인 바, 기획감사실장은 동 자료를 읍면 상호간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자료 교환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읍면장은 이를 참고하여 모범 작성 사례를 배치마킹 하는 등 자료 작성 형식과 내용 구성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p>		
조 치 결 과	<p>○ 우리읍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간부공무원이 대책회의를 통하여 기본틀과 보고내용을 결정한 후 미흡한 점은 수차례 수정과 보완을 통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되도록 타면의·모범사례를 참고로 작성하고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관행 개선	소관부서	주 내 면
지 적 사 항	<p>○ 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읍·면은 해당 의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에 정성을 기울였으나 일부 읍·면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자료에 지나치지 않는 실정인바, 기획감사실장은 등 자료를 읍·면 상호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교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읍·면장은 이를 참고하여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자료작성 형식과 내용구성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p>		
조 직 사 항	<p>○ '98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이동과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의 업무미숙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으나 직원의 업무연찬과 교육 등으로 행정업무 전문화를 추진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실있게 작성, 정확하고 분명한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관행 개선	소관부서	온 현 면
지 적 사 항	<p>○ 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읍·면은 해당 의원이 파악코자 하는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에 정성을 기울였으나 일부 읍·면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않는 형식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는 실정인 바 기획감사실장은 동 자료를 읍·면 상호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교환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읍·면장은 질 향상이 모범 작성사례를 벤치마킹 하는등 자료 작성 형식과 내용 구성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p>		
조 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p> <p>○ 읍·면 상호간 협조하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되도록 하겠음.</p>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관행 개선	소관부서	남 면
지 적 사 항	<p>○ 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읍·면은 해당 의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에 정성을 기울였으나 일부 읍·면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자료에 지나치지 않는 실정인바, 기획감사실장은 동 자료를 읍·면 상호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교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읍·면장은 이를 참고하여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자료작성 형식과 내용구성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p>		
조 치 사 항	<p>○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의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전에 각 읍·면장들과 연락하여 상호 교환토록 하여 작성형식과 내용구성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음.</p>		
사			
항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 관행 개선	소관부서	광적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읍.면은 해당 의원이 파악코자 하는 사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음 ○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는 실정임. ○ 읍.면 상호간 자료 교환이 가능토록 각 읍.면장은 동 자료를 참고하여 모범 작성사례를 벤치마킹 하는등 자료 작성형식과 내용구성의 질향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에 제출된 ‘98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사실상 100% 완벽하지는 못했음. ○ 나름대로 각 의원께서 질의하신 목적, 내용 등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 자료를 작성한다고는 하였으나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했음. ○ 금번 지적사항을 교훈삼아 '99행정사무 감사시에는 보다 완벽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1년동안 추진해 온 행정사무에 대해서 정확한 수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관행 개선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읍.면은 해당 의원이 파악코자 하는 사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에 정성을 기울였으나 일부 읍.면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는 실정인 바 기획감사실장은 동 자료를 읍.면 상호간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자료 교환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읍.면장은 이를 참고하여 모범 작성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료 작성 형식과 내용구성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작성 요구시에는 답습적인 자료 제출에서 벗어나 관련부서별 협조를 통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사전검토를 통하여 성실한 자료를 준비도록 하겠음. 		
조치결과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관행 개선	소관부서	장 흥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읍·면은 해당의원이 파악코자 하는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에 정성을 기울였으나 일부 읍·면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는 실정인바 기획감사실장은 동 자료를 읍·면 상호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교환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읍·면장은 이를 참고하여 모범 작성사례를 벤치마킹 하는등 자료작성 형식과 내용구성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시에는 의회에서 해당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후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으며, 작성된 자료를 타 읍·면에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한후 비교분석하여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